

대법원 2014.5.29.선고 2013도4566 판결

【의료기기법위반·의료법위반】, [공2014하,1362]

【판시사항】

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갑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·사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 을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갑 등이 속한 '의료기관'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갑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·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(2011. 4. 7.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,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,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·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,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'의료기관'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, 피고인 을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갑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, 제88조의2 , 구 의료기기법(2011. 4. 7.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2항 (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), 제44조의2 (현행 제53조 참조), 제46조 (현행 제55조 참조)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

외 10인

【상 고 인】 검사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외 4인



【대상판결】

【원심판결】 서울중앙지법 2013. 4. 2. 선고 2013노386 판결

【주문】

피고인 8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피고인 8 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[이유]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1. 피고인 8 에 관하여

기록에 의하면, 위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3. 6. 9.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 송법 제382조 ,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2.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, 공소외 1 주식회사 (이하 ' 공소외 1 회사 '라 한다), 피고인 11 주식회사 (이하 '피고인 11 회사 '라 한다)는 각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의료기기를 납품 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반면, 저렴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 로 급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과 공소외 1 회사 , 피고인 11 회사 가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,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, 구 의료기기법(2011. 4. 7.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 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,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・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,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'의료기관'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 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, ② 공소외 1 회사 , 피고인 11 회사 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대상 은 피고인 1 , 2 , 3 , 4 , 5 , 9 (이하 '피고인 1 등'이라 한다)가 속한 의료기관인 ○○○병원 , △△△△병 원 , □□병원 , ◇◇병원 , ☆☆☆☆병원 , ▽▽▽병원 , ◎◎◎◎◎병원 등인 점, ③ 피고인 1 등은 위 의료 기관들의 실무담당자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·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어도 그들 이 공소외 1 회사 나 피고인 11 회사 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, ④ 피고인 10 역시 피고인 11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적이 없고, 의료기관 개설자인 공소외 2 학교법인 의 실무담당자일 뿐 위 학교법인의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지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, 피고인 6 , 7 , 피고인 11 회사 가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10 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관련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의료법이나 구 의료기기법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이나 제공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3. 그러므로 피고인 8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피고인 8 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대법관 박보영(재판장) 민일영(주심) 이인복 김신